

주요 경영상황 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에 따라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9년 09월 25일

금융투자협회 귀중

회 사 명 : 히스토리투자자문 주식회사
(영문명) Hisstory Investment Management Co., Ltd
(홈페이지) <http://hisstoryinv.co.kr>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7, 2302호
(전 화) 02 - 6337 - 5595

대 표 이 사 : 박 지 훈

담 당 임 원 : (직 책) 과장
(성 명) 이수경 (전 화) 02-6337-5595

작 성 자 : (직 책) 대리
(성 명) 김수연 (전 화) 02-6337-5595

제 출 이 유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따른 주요 경영상황

※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따른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15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675,675
2. 1주당 액면가액 (원)		740
3. 증자전 발행주식 총수 (주)	보통주식 (주)	4,000,00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99,999,5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매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p>제10조(신주인수권)</p> <p>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p> <p>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전략적 제휴,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또는 국내외 일반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주 아닌 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6. 이사회 결의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8.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10.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에 배정하는 경우 11. 상법 제542조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주식의 내용	전환우선주
기타	-

【전환권이 부여된 경우】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100%
	전환청구기간	2019.09.26.~2029.09.25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보통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675,675
의결권에 관한 사항		없음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0%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채무약정 사항 등)		-

【제3자배정증자의 경우】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740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해당사항없음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19.09.26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9.09.26
11. 신주권교부예정일		미교부(주권 미발행)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해당사항없음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09.25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		부
14.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해당사항없음
15.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비상장 금융투자업자
16.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해당사항없음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p>제10조(신주인수권) ①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 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신주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호의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전략적 제휴, 재무구조개선,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제휴업체, 국내의 투자자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외국의 증권거래소나 전산 또는 호가시스템으로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p>③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 의 2, 제3호,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로의 전환을 위한 증자</p>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 주식수(주)	비고
장재영	기타	-	-	270,270	
윤여직	기타	-	-	405,405	-